

大學에 있어서 奨學金制度의

實態와 改善方案

朴先榮

(東國大學學生處長)

I. 論議의 범위

장학금제도의 사전적 의미는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경제적인 곤란 때문에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이나, 국가 또는 人類文化上 특별히 요구되는 분야의 교육을 받는 학생에게 학비를 보조해 주는 넓은 의미의 育英制度와, 학술연구자에게 연구비나 상금을 주어 그 연구를 장려하는 學術研究獎勵制度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주로 넓은 의미의 육영제도라는 의미로 제한하여 논의할 것이며 그것도 現大學 學部의 것으로 한정하려 한다.

이 글에서 취급코자 하는 논의의 범위는 대학에서의 장학금제도의 목적과 장학금의 종류, 대상, 금액, 기간 및 장학생의 지도 등 주로 장학금의 조달·운용·지급으로 이루어지는 現行 대학의 장학금 管理體制의 문제에 국한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논의를 전개해 갈에 있어서 독자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필자가 이 방면에 대하여 특별한研究를 한 바 없다는 점이다. 단지 대학의 장학금 지급의 實務를 관장하고 있는 학생처장의 일을 보면서 느껴 온 현장 감각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는 논의이므로 대학에 몸담고 있는 人士들에게는 이 글이 다소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인지도 모른다.

II. 奖學金制度의 目的

장학금 지급의 실무적인 문제는 주로 어떠한 학생 몇 명에게 얼마의 장학금을 어느 기간에 얼마씩 지급하고 어떻게 지도하느냐의 문제이다. 이는 결국 장학금제도의 목적에 귀착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확고한 教育哲學이 밀 반침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여 재능은 있으나 경제적 곤란 때문에 修學의 기회가 상실될 우려가 있는 학생에게 학비를 보조하여 교육 기회의 실질적인 균 등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적인 정의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개인적인 복리와 사회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또한 국가 및 인류에 필요한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誘引體制로서 이를 통해 국가 내지 세계 인류의 복리와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 의식이 名目上의 수준을 넘어서서 관계자 모두에게 철저히 인식되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경우 국·공립이나 사립이나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대학에 있어서 이 점에 철저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다. 그리하여 비교육적인 副作用이 없지 않은 듯하다. 특히 이러한 점은 가난한 가정의 학생에게 지급하는 家庭獎學金의 경우가 심한 듯하며, 또 일부 들리는 바에 의하면 한국 대학의 특수한 여건 속에서 情實이 개재하거나 비교육적인 경제적 지급이 있어 일반 학생들에게 의혹과 비난을 사고 있는 경우도 있다 한다. 그리고 私立學校의 경우 대부분 그 학교의 명성을 높이기에 급급한 나머지 우수한 신입생 유치나 국가고시 합격생의 다수 확보를 위해 균형을 잃은 특혜의 장학금을 주고 있다 한다.

장학금제도는 단순한 同情도 아니며 또한 그것을 미끼로 학교의 이름을 선전하거나 또는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어디까지나 확고한 교육철학에 입각하여 대학의 사명과 기능을 다하기 위한 수단이며 투자가 되어야 한다.

III. 奨學金의 種類와 對象 學生

대학에서의 장학금은 그 支給主體에 따라 크게 보아 校內獎學金과 校外獎學金으로 구분될 수 있다. 여기에서 교내장학금은 학교의 연간 예산 속에 포함된 校內의 일부로서, 대상 학생의 조건에 따라 여러 종류의 장학금으로 나누어진다. 각 대학에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예를 들어 본다면 다음과 같다.

- (1) 우수신입생 장학금 : 입학시험 查定에 따른 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과 학력고사 우수자에 대해 사전에 보장해 주는 장학금
- (2) 학업성적 우수자 장학금 : 재학생 가운데 前 학기의 학업성적 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 (3) 考試獎學金 : 각종 국가고시에 합격할 가능성이 크거나 또는 합격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 (4) 특기 장학생 : 藝·體能에 특기를 가진 자

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 (5) 원호 장학금 : 전몰, 상이군경의 유가족이나 독립유공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 (6) 教職員子女 장학금
- (7) 家事 장학금 : 경제적으로 빈곤한 가정의 학생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
- (8) 근로 장학금 : 교내에서의 근로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장학금(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학도 호국단 간부, 교내신문이나 방송에 참여하는 학생요원 등에게도 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 (9) 기타 특수 장학금 : 학교발전에 크게 기여 한 인사의 자녀와 建學理念에 따른 특수학과 학생이나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및 기타 앞에서 例示된 종류 이외의 장학금

그리고 이러한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학생들의 공통적인 資格基準은 대개 성적의 일정한 하한선을 정하여 제한되고 있으며, 전전한 사상과 방정한 품행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물론 장학생의 일반적 자격 기준은 ① 成績優秀型, ② 經濟的必要型, ③ 人物必要型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가능하면 이 세 가지型을 종합하여 그 대상 학생을 선별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考試獎學, 특기장학, 기타 특수 장학의 일부와 같이 그 대상 학생의 자격이 뚜렷하게 객관적으로 조건지워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사상의 전전과 품행의 方正은 정계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실제의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서 사실상 人物必要型의 관점은 별로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이 빈곤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성적 우수자의 경우, 학업성적이 우수한 재학생보다豫試成績 우수자에게 보다 더 많은 특혜를 보장하는 일이다. 제한된 장학금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 다른 학생들에게는 장학금 혜택의 폭이 좁아지는 폐단이 생기며, 입학 당시에는 비록 學歷考查成績이 우수하지 못했으나 입학 후 학업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에게 결과적으로 불공평한 대우를 하게 된다는 점이다.

또 人物必要型에 속한다 할 수 있는 특기 장학생들에게도 다른 장학생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특혜를 주고 있어 공평성을 잃고 있으며, 심지어 藥·體能의 특기자는 입학 전에 보이지 않는 막대한 경비를 들여가면서 각 대학들이 경쟁적으로 스카웃하고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각 대학 나름으로 그 대학 자체의 특수한 교육철학에 입각하여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학보다 名聲을 더 얻어 보자는 경쟁적 의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아도 큰 잘못이 없을 것이다.

필자는 여기에서 각 대학이 보다 더 큰 명성을 얻고 발전하려는 의도 자체를 문제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비교육적인 부작용과 不公平性을 지적코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은 대학가에서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쉽게 개선될 수 없는 것은 시정하는 大學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손해 내지 피해를 본다는 심리 때문인 것 같다. 따라서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학생 1인당 장학금액의 상한선을 法制化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藥·體能의 특기자 경우에는 공동추첨제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 봄직하다.

한편 경제적 필요형에 해당하는 가사장학금의 경우 실체에 있어 그에 대한 공정한 檢定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물론 국빈자 증명서나 재산세 납부증명서 또는 전세계약서 등을 참고할 수 있겠으나 이것으로는 입증할 수 없는 경제적 빈곤 학생이 적지 않은 것을 大學現場에서는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장학금 관리의 실무 전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로서는 각 학과의 계학생의 인원 비율에 따라 대상 학생수의 上限線을 제한하여 각 학과에 배분하게 되고, 각 학과에서는 한 학생이라도 더 장학금을 주었으면 하는 것이 통상적인 실태이다. 각 학과의 指導教授들은 제한된 수자의 가사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대부분 희망 학생들과 면담하여 檢定하게 되는데, 실체에 있어 자존심이 강한 학생은 경제적 사정이 대단히 어려워도 탈락되기 일쑤이며 크게 어렵지 않아도 비굴할 정도로 어렵다고 사정하고 폐를 쓰는 학생은 선발되는 예가 허다하다.

하나의 실례로 8명의 가사장학생을 추천하는데 있어서 20명의 신청자가 와서 사정하는 가운데 18명의 학생은 아버지가 갑자기 대단히 위독 하셔서 生計 자체가 앞으로 막막하다고 하더라면서 가사장학금제도가 학생들에게 비굴한 태도를 조장하는 것 같다고 하는 말을 어떤 교수로부터 직접 들은 적이 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이자 없이 畢業後에 상환하는 대여장학금이나 기타 은행융자는 그 학생들이 기피하더라는 것이다. 결국 공짜심리에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다. 진정 경제적 곤란에 처했더라도 그 학생들에게 떳떳한 자존심을 키워 주기 위해서도 무상의 장학금제도는 근본적으로 재검토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필자가 이해하기로는 가사장학금 제도는 심각한 社會問題로 제기되고 있던 초·중등학생의 과외수업을 금지시키면서 이에 따라 과외수업을 통해 학비를 조달하면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 제5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文教部의 강력한 장학금지급 지침에 의해 크게 확대된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은 비교육적 副作用이 점차 밝혀짐에 따라 문교부에서도 가급적 무상의 가사장학금은 제한하고 대여장학금이나 근로장학금을 확대도록 하는 指針을 시달하고 있다.

그러나 실체에 있어서 적지 않은 대학에서는 아직도 가사장학금제도가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리지고 있다. 자체에 앞으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예 가사장학금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대신 대여장학금제도를 대폭적으로 확대·강화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이 이외에 奨學法人 등 校外의 장학금제도가 있으며 여기에도 그 목적이나 규모 등 개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 많은 문제가 없지 않으나 지역의 제약도 있고 또 대학 자체만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이기도 한 점이 있어 여기에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IV. 장학금의 支給金額과期間

대학에서의 교내 장학금의 액수는 대개 ① 등록금 전액, ② 수업료와 기성회비의 전액, ③ 수

업료나 기성회비 가운데 어느 한 가지의 전액 또는 반액, ④ 기타 학비보조금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런데 현재 각 대학에서의 장학금의 종규모는 문교부에서 시달하는 奨學金支給指針에 의해 1,2학년 학생 등록금 총액의 20%와 3,4학년생 등록금 총액의 10%를 그 財源으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에서 학력고사성적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마련된 우수신입생 장학금과 藝·體能系의 특기자 장학금의 경우에는 등록금 전액 이외에도 상당한 액수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그것은 등록금 이외의 學費補助의 성격을 띤다 할 것이다.

위의 두 가지 장학금을 제외하고는 장학생 전체의 수에 비해 볼 때 소수의 장학생에만 등록금 전액 또는 수업료와 기성회비 전액을 지급하며 대부분의 장학생들에게는 수업료나 기성회비 가운데 어느 한 가지만의 전액 또는 반액을 지급하는 것이 각 대학의 일반적인 實態라 할 것이다. 따라서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 대부분들은 말만 장학금을 받지 실제로 있어서는 등록금의 일부를 마련해야만 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당국이 한정된 奖學財源을 가지고 되도록이면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려는 고심에서 나타난 것이라 이해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 대부분의 경우 校內獎學金은 실질적인 장학금이 되지 못하고 명목상의 장학금에 지나지 않는다는 불평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장학금 지급액에 있어 명목상의 장학금이 아니라 실질적인 장학금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극히 原論的인 논의에 불과하지만 장학 재원의 확대 문제가 제기된다 하겠다.

다음으로는 장학금의 支給期間에 대해 간단히 논의해 보기로 한다. 학력고사 성적우수자와 예·체능계의 特技者는 실제로 있어서 입학 전에 보장되며, 원호장학금과 교직원자녀 장학금은 입학과 동시에 결정된다. 고시장학금은 국가고시에 1차 또는 1,2차 합격함과 동시에 장학생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교내에 고시장학위원회가 있어 매학년초에 일정한 선발 과정을 거쳐 고시에 합격할 가능성이 있는 학생으로 當定된다. 이 외의 장학금에서, 前節의 장

학금의 종류에 열거된 「기타 특수장학금」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매학기 등록기간 적전에 결정된다.

그 지급기간은 실제로 있어 入學前에 장학금이 보장되는 경우 학력고사 성적우수자에게는 입학 후에도 일정한 學業成績 유지를 조건으로 하여 졸업 때까지 계속 지급되며, 특기 장학금도 어떤 특수한 사태가 나타나지 않는 한 역시 졸업 때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입학과 동시에 결정되는 장학금들은 우수신입생 장학금 가운데 입학시험 成績査定에 따른 우수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학업 평균성적 B학점의 계속 유지를 조건으로 하여 졸업 때까지 계약된다. 그 이외에는 거의가 학기 단위이다. 다시 말해서 현재 각 대학에서의 장학금 지급은 대부분 學期單位인 것이다. 이는 대학에서의 학업이수가 학기 단위제라는 것을 감안하면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기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은 결코 쉽사리 간파될 수 없는 것들이라 하겠다. 첫째로 학력고사 우수자의 유치와 관련된 문제이다. 現行의 졸업정원제 아래에서는 학업성적을 相對評價의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대부분 대학의 실태이다. 이런 체제 속에서는 입학 전에 재학 기간 중 일정한 학업성적의 계속유지를 조건으로 졸업 때까지의 장학금 계속지급을 보장받은 학생이 재학 기간 중 자신의 학업성적 자체가 나빠서라기보다도 상대적으로 다른 학생들의 성적이 높기 때문에 낮아져 충돌에 장학금 지급 중단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될 수 있다. 그리하여 해당 학생이나 그 학생의 출신고등학교로부터 적지 않은 오해를 받고 있는 대학들이 있는 것 같다.

이에 대한 改善策으로서는 입학 후의 일정한 학업성적 계속 유지의 하한선 조건을 설정하거나 다시 조정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前節에서도 말했듯이 예시성적 우수자를 상대로 한 일종의 스카웃과 같은 현상 자체에 대한 개선이 강력하게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가사장학금과 관련된 문제이다. 學期별로 장학금이 지급되고 그리고 각 학과별로 일

정한 수자가 배정되는 현실 속에서 가사장학금이 아니면 학업의 계속 유지가 어려운 학생은 매 학기가 끝날 때마다 불안과 초조 속에서 고심하고 있다. 이러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안정된 心理狀態에서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前節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비교육적인 문제점이 많은 현재의 가사장학금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대여장학금을 보장해 주는 정책 전환이 요청된다. 또한 次善策으로는 지급 기간의 신축성 있는 운용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진정 재능은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대단히 궁핍해서 본인이 졸업하여 취업하기 전에는 家庭의 경제적 상황을 호전시키기 어렵다고 확인된 학생에 대해서는 각 학과의 배정된 수자와 관계 없이 일정한 학업 성적의 하한선을 조건으로 하여 실질적인 장학금이 될 수 있는 금액을 졸업 때까지 계속 지급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改善策으로 강구됨직하다. 물론 여기에는 예산상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이런 학생이 실제로 있어 그렇게 많은 수자는 아니며, 따라서 현재의 장학금을 가지고도 合理的으로 운용하면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여기에서 한 가지 추가해서 언급하고 싶은 것은 대체적으로 보아 장학금 지급의 금액 및 기간과 관련하여 校外獎學金이 교내장학금보다 학생들에게 유리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교내 장학금은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대부분 액수도 적고 기간도 學期制인데 비해, 교외장학금은 대부분 액수도 등록금 전액 이상이며 지급 기간도 학업성적이 B학점만 유지되면 졸업 때까지 계속된다. 따라서 학생들은 교내장학금보다는 교외장학금을 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따라서 교내장학금은 액수와 기간에 있어서 교외장학금의 水準으로 끌어올리고 동시에 교외장학금의 확대를 위하여 정부당국에 의해서 획기적인 제도적 誘引體制가 사회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V. 奨學生의 指導 및 管理

장학제도는 이미 말한 바처럼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 기관으로서의 대학 본연의 사명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投資의 하나이다. 그렇다면 大學教育의 사명과 기능 수행에 보다 큰 효과를 제고하도록 장학금 지급에 따른 지도와 관리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적지 않은 경우 대학에서는 장학증서 하나 품위 있게 제대로 수여하지 않고 있으며, 장학금의 의의와 장학생으로서의 공지 및 앞으로의 태도 그리고 마음가짐에 대한 것을 깨우쳐 줄 수 있는 事後의 행사 하나 제대로 개최하지 않는 것이 현재 대부분 대학의 실태인 것 같다. 하물며 사후에 꾸준히 장학생들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체계에 있어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기껏해야 대부분의 각 대학에서는 장학금 支給通知書를 발행하고 그 지급한 명단만 비치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장학금을 낭비하거나 악용하는 가능성도 있으며 실제로 그런 사례도 없지 않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어쨌든 장학금 지급에 따른 지도적 차원의 관리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품위 있는 장학증서의 發給은 가사장학금 이외에는 해당 학생의 공지와 면학에의 보다 큰 成就動機의 제고에 필요한 것 같으며, 발급할 때에는 지도교수님들을 모두 모신 가운데 적절한 행사를 통해 각 장학금의 의의와 장학생의 마음가짐을 알려주고 士氣를 진작시키는 것이 교육적으로 옳을 것 같다.

기타 장학생의 모임을 구성하여 이따금 교양강좌 개설 및 저널의 간행이나 기타 행사를 개최하고 또한 친목도 도모하게 하여 바람직한 의미에서 인격의 相互形成의 계기가 되도록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근래에 새로 생긴 교수추천제 카드에는 꼭 장학 사실을 기록해 두어 指導資料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